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대전지방검찰청	보 도 자 료
	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김명수 전화 042-470-4041 / 팩스 042-470-4240	2021. 4. 1.(목)

제 목	‘유령법인’ 명의 대포통장 유통 · 개설사범 수사결과 - ‘유령법인’에 대한 상법상 해산명령 청구, 법령 등 개정건의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- 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(부장검사 김향연)는 속칭 ‘유령법인’과 그 지점 총 109개를 개설한 후 그 명의의 통장 323개, 현금카드 155개 등 **접근매체 총 521개를 보유하다 적발된 ‘대포통장’ 개설 · 유통 사범을 철저히 수사**하여 **조직운영자 4명을 구속기소**하고, **통장개설 대리인 7명을 불구속 기소**, 5명은 기소중지, 2명은 타관이송 하였음
- 또한, 위 **‘유령법인’**을 이용한 추가범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8개 법원에 15개 법인에 대한 **상법상 해산명령(상법 제176조)을 청구**하였음

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순번	피고인	공소사실 요지(죄명)	처분
1	A○○(37세) 유통조직 총괄	• ’20.3.~10. 공모하여, ‘유령법인’ 명의 통장등 접근매체 521개를 인터넷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고, 그중 일부를 한 달에 100만원~130만원을 교부받고 대여함 **[전자금융거래법위반]** • ’18.10.~’20.10. 공모하여,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‘유령법인’과 그 지점 명의의 계좌 59개를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직접 개설하고,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좌 개설 **[업무방해]**	’20. 11. 23. 구속기소 ’20. 12. 31. 불구속기소 ’21. 3. 29. 불구속기소

순번	피고인	공소사실 요지(죄명)	처분
2	B○(37세) 유통조직 조직원	• '20.3.~10. 공모하여, '유령법인' 명의 통장·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521개를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고, 그중 일부를 한 달에 100만원~130만원을 교부받고 대여함 **[전자금융거래법위반]** • '19.12.~'20.10. 공모하여,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은행 직원을 기망해 62회에 걸쳐 '유령법인'과 그 지점 명의 계좌 개설 **[업무방해]**	'20. 11. 23. 구속기소 '21. 3. 29. 불구속기소
3	C○○(35세) 유통조직 조직원	• '20.6.~10. 공모하여, '유령법인' 명의 통장·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521개를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고, 그중 일부를 한 달에 100만원~130만원을 교부받고 대여함 **[전자금융거래법위반]** • '20.6.~10. 공모하여,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은행 직원을 기망해 37회에 걸쳐 '유령법인'과 그 지점 명의 계좌 개설 **[업무방해]**	'20. 11. 23. 구속기소 '21. 3. 29. 불구속기소
4	D○○(31세) 유통조직 조직원	• '20.8.~10. 공모하여, '유령법인' 명의 통장·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521개를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고, 그중 일부를 한 달에 100만원~130만원을 교부받고 대여함 **[전자금융거래법위반]** • '20.8.~10. 공모하여,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은행 직원을 기망해 30회에 걸쳐 '유령법인'과 그 지점 명의 계좌 개설 **[업무방해]**	'20. 11. 23. 구속기소 '21. 3. 29. 불구속기소
5	E○○(29세) F○○(33세) G○○(35세) H○○(36세) I○○(31세) J○○(36세) 각 계좌개설 대리인	• A○○ 등과 공모하거나 성명불상의 '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하여, - E○○는 '2020.1.~4.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44개의 '유령법인'과 그 지점 명의 계좌 개설 - F○○는 '19.6.~9. 위와 같은 방법으로 42개의 '유령법인'과 그 지점 명의 계좌 개설 - G○○는 '19.3.~7.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개의 '유령법인'과 그 지점 명의 계좌 개설 - H○○은 '2020.7.~10.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개의 '유령법인'과 그 지점 명의 계좌 개설 - I○○은 '19.10.~12.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개의 '유령법인'과 그 지점 명의 계좌 개설 - J○○은 '2020.9.~10.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개의 '유령법인'과 그 지점 명의 계좌 개설 - I○○은 '2020.4. 위와 같은 방법으로 2개의 '유령법인'과 그 지점 명의 계좌 개설	'21. 3. 29. 각 불구속기소

[본건 범행 구조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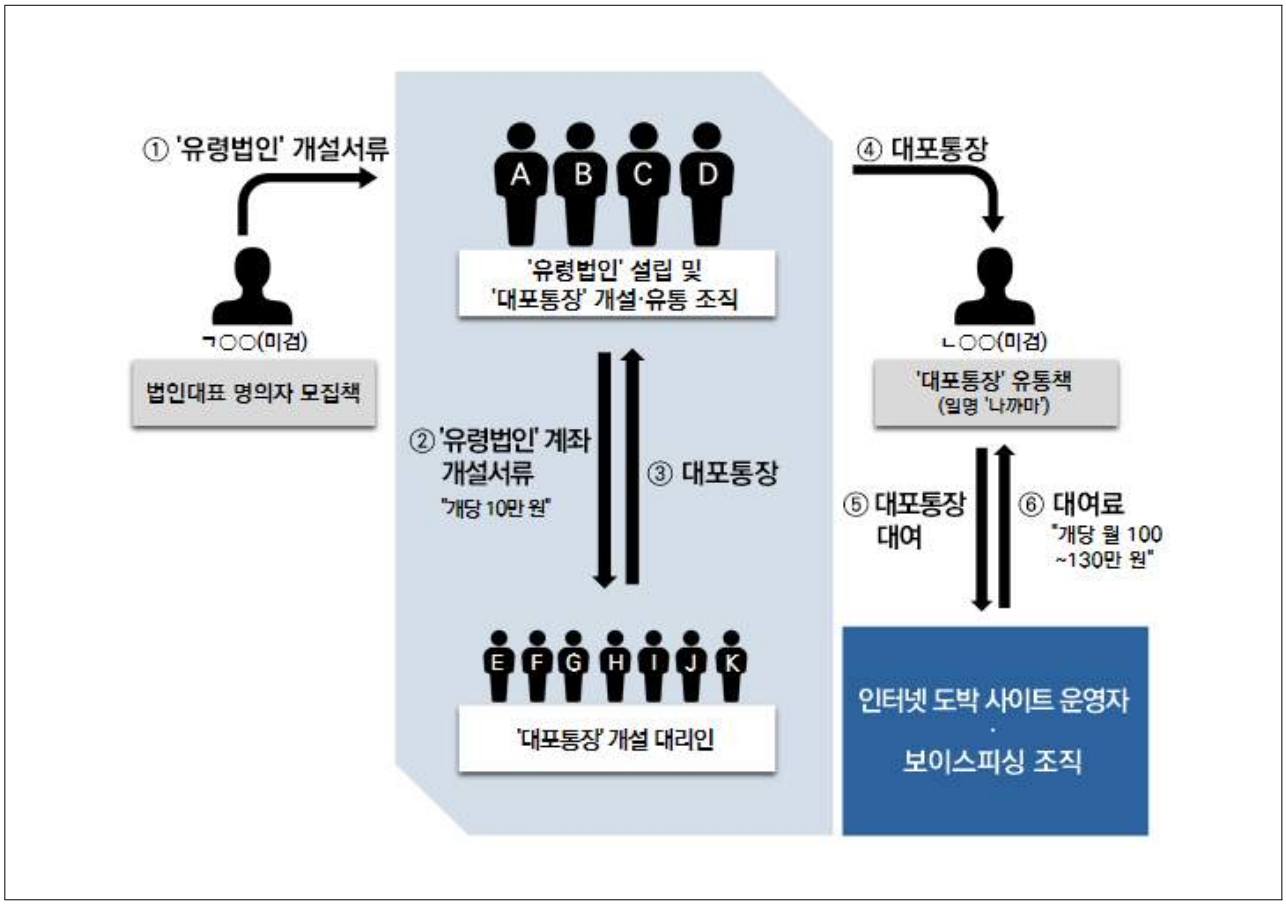

2 주요 수사 경과

○ '20. 11. 5. A○○ 등 4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속사건 접수

○ '20. 11. 13. 위 사건 **압수물(통장 등 접근매체) 관련 계좌 압수수색**

○ '20. 11. 23. A○○ 등 4명 구속기소

○ '20. 12. 13. E○○ 등 **계좌개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수사개시**

※ A○○ 등이 인터넷으로 다수의 사람을 모집한 후 '유령법인' 직원으로 거짓말하도록 하여 계좌 개설 후 접근매체를 유통시켰다고 진술하여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개시

○ '20. 12. 30. A○○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여죄 인지 → 12. 31. 기소

○ '21. 2.~3. 압수된 323개 통장 관련 계좌에 대한 **지급정지 결정·통보**

○ '21. 3. 23. A○○의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 추가인지를 포함하여 **총 13명 인지**

○ ’21. 3. 29. A○○ 등 11명 불구속기소, 2명 타관이송

○ ’21. 4. 1. **‘유령법인’ 본점 15개에 대한 상법상 해산명령청구** 및 시중은행에 업무협조(법인해산명령 청구대상 통보) 발송

※ 해산명령 청구 과정에서 ‘유령법인’의 명칭, 임원, 소재지 등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여, 추가범행 가능성이 높아 시중은행 본점 등에 위 법인 명의의 추가 계좌 개설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 발송

3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

○ ‘인터넷도박’ 및 ‘보이스피싱’ 등 범죄에 사용되는 ‘대포통장’ 유통 조직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유통조직원 뿐만 아니라 그에 가담한 계좌 개설 대리인까지 엄단하였음

○ 본 건 **‘유령법인의 대포통장’에 의한 추가 범행을 원천 차단**하기 위해 **상법상 회사 해산명령을 적극 청구**하고, 관련 사실을 **시중은행 본점에 통보**하여 향후 추가계좌 개설에 신중을 기하도록 협조요청

※ 일부 조직원이 발각되더라도, 법인이 남아있는 한 **명칭, 소재지, 임원 등 일부 사항만 변경하여 계속 같은 패턴으로 범행에 이용**될 가능성이 현저하여 관련 범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법상 해산명령 청구

○ 또한, 상법상 해산명령 청구에 대한 효과가 즉시 발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사의 해산명령 청구를 금융기관에 필수적으로 통보하고, **은행은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 추가 개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** 등 제도개선 건의

○ 향후, 대전지방검찰청은 **‘대포통장’을 이용한 범행에 엄정대응**하고, 보다 근본적으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다하겠음